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1/3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中 국무원, <외국인 투자 확대 24개 조치> 발표

■ 8월 13일, 국무원은 <외국인 투자 확대 24개 조치>(《关于进一步优化外商投资环境 加大吸引外商投资力度的意见》)를 발표함

- 동 조치의 주요 내용으로 △첨단분야의 외국인 투자 강화 : △외국인 투자기업 및 내자 기업 동등 대우 보장 : 외국인 투자기업이 정부조달에 공평하게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 △외국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속 강화 : 외국인 투자 권익 보호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악의적인 행위를 단속하고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벌 △외자기업 운영의 편의성 제고 : 외국인 기업의 비자 발급 신청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 기술인력의 영주권 신청에 대해 편의 제공 △외자기업의 재정 및 조세 지원 강화 :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목록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수입 장비 면세 지원조치를 시행하는 것 등임

자료원 : 국무원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308/content_6898048.htm

2 中, <포럼 활동 관리 강화> 발표

■ 8월 9일, 중국 선전부, 외교부,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부처는 공동으로 <포럼 활동의 규범화 관리에 관한 통지>(《关于加强论坛活动规范管理的通知》)를 발표함

- 동 조치의 주요 내용으로 △포럼을 조직하는 기관·단체, 기업은 법에 따라 사전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 △포럼 명칭에 임의로 ‘중국’, ‘중화’, ‘전국’, ‘국제’, ‘세계’, ‘정상회의’, ‘고위급’ 등의 단어 사용 금지 △주최측은 당 간부와 정부 인사를 업무와 무관한 포럼 행사에 초청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 △공안과 인터넷 관리 당국에 당과 정부 기관 명의를 이용해 포럼을 개최하거나 허위 홍보하는 행위를 단속 △포럼 활동의 장소제공자에 대한

표준 관리를 강화 △불법 포럼 활동을 개최하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조직 및 단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 등임

자료원 : 신화망

https://www.gov.cn/lianbo/bumen/202308/content_6897541.htm

3 中, 〈안면인식 기술 규제 조치〉(초안) 발표

- 8월 8일,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개인 정보 및 재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면인식 기술 활용 안전관리 규정〉(초안)《人脸识别技术应用安全管理规定(试行)》을 공개하고 9월 7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발표함
- 동 초안은 25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 반드시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호텔 객실이나 화장실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안면인식 장치 설치 금지 △은행·공항·미술관·전시관·도서관 등 공공장소도 법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안면인식 기술로 신원을 확인하는 행위를 금지 △공공장소에서 수집된 안면정보는 안전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불법으로 공개하거나 외부에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거나 1만명 이상의 안면정보를 저장하는 업체는 30일 이내에 현금 이상 사이버정보판공실에 등록하도록 규정하는 것 등임

자료원 : 중국사이버정보판공실

http://www.cac.gov.cn/2023-08/08/c_1693064670537413.htm

http://news.cyol.com/gb/articles/2023-08/08/content_99IPOqUa3x.html

4 中, 2024년부터 〈강제성 제품인증 전자인증서 전면 시행〉 발표

- 8월 10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4년 1월 1일부터 〈강제성 제품인증 전자인증서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 강제성 인증(CCC, 强制性产品认证) : 〈중국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규정〉에 따라, 해당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반드시 강제성 검사 및 심사를 받아야 하며, 규정된 인증 마크를 획득하지 못하면 수입, 출고 판매, 영업 서비스 장소에서 사용 불가함. 〈강제성 제품인증 목록〉에 포함된 제품으로는 가정용 전자제품, 자동차, 안전유리, 의료기기, 전선 케이블, 완구 등이 있음
- 이에 따라 전자인증서는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의 규정에 따라 통일된 양식, 내용을 사용하며 해당 전자인증서에는 인증 표시, 인증서번호, 인증 의뢰인의 명함 및 주소, 생산자 명칭 및 주소, 제품 명칭, 규격, 허가증 발급일 및 유효기한, 인증서 조회 쿼리코드, 발급기관 등의 내용이 포함됨

- 한편, 중국 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인증서를 획득한 후 CCC마크를 부착하며, CCC마크는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사이트 (<https://www.cnca.gov.cn>)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

자료원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https://www.samr.gov.cn/zw/zfxxgk/fdzdgnr/rzjgs/art/2023/art_3f813ba4050d42fe9dd1545917e8e0f9.html

5 中, 〈2023년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계획〉 발표

- 8월 9일,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은 〈2023년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계획〉(《2023年知识产权强国建设纲要和“十四五”规划实施推进计划》)을 발표함
- 동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지식재산권 법률 및 규칙 완비 : 〈상표법〉, 〈특허 심사 지침〉, 〈저작권 행정처벌 실시법〉,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법〉, 〈부정경쟁 방지법〉 등에 대해 개정 △지식재산권 주요 정책에 대한 개혁을 추진 : 특허 상표 심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향상 △신흥 분야 및 특정 분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 :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의 구축을 추진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전문분야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정비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및 행정 보호를 강화하는 것 등임

자료원 : 국가지적재산권국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308/content_6898128.htm

6 中 상무부, 〈미국의 對중국 투자제한 조치에 반발〉 발표

- 상무부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8월 9일 인공지능·반도체·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와 관련된 자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금지령을 내린데 대해 중국 상무부는 8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함
- 미국은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를 제한하고 '디리스크링(de-risking·위험제거)'을 핑계로 투자 영역에서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분리)'을 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 무역질서 및 글로벌 공급망을 엄중하게 파괴하는 행위로 중국은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이에 상응 조치 취할 것을 촉구함
- 한편,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시장 경제와 공정 경쟁 원칙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글로벌 경제회복에 장애물을 설치하지 말 것을 당부함

자료원 : 상무부

<http://www.mofcom.gov.cn/article/xwfb/xwfytrh/202308/20230803426502.shtml>